

행정사무감사계획

(시민보사위원회)

1. 감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,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,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'97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1996. 11. 26. (화) ~ 12. 2(월) (7일간)

3.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

가. 대상기관 :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

- 보건소(보건행정과, 보건지도과, 의약과)
- 시민생활국(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위생과, 지역경제과, 환경관리과, 생활환경과)
- 각동사무소

나. 사무의범위 :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자치구사무

4. 감사반의 편성

- 감사총괄 :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

(가나다순)

위원장	간사	감사위원	전문위원	직원
이명훈	전병운	김동철, 김형수, 노동우, 박정자 심용진, 서홍선, 이정운, 최락희	유재한	사무국 직원 2 속기사1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 시	감 사 장 소	감 사 대 상	비 고
'96. 11. 26	제2감사장	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 약 과	필요시 현장확인 ※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.
11. 27	.	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 생 과	
11. 28	.	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생활환경과	
11. 29	.	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 약 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	
11. 30	.	위 생 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생활환경과	
12. 1	----- 공 휴 일 -----		
12. 2	.	강평	필요시 현장확인

6. 감사요령

대 상	감 사 방 법	주요 감사 착안 사항	비 고
보 건 소 시민생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황보고 청취 ○ 질의 및 답변 ○ 서류 및 현지확인 (필요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보건기획, 평가 및 통계 등의 현황 · 문서, 예산, 인사 현황 · 진료비 징수 및 진단서 발급현황 ·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현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출석관계 공무원 - 소관국장 및 관계공무원

대 상	감 사 방 법	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	비 고
보 건 소 시민생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황보고 청취 ○ 질의 및 답변 ○ 서류 및 현지확인 (필요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급성전염병 예방현황 ·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·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· 성인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· 주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·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· 예방접종 계획 수립현황 · 의료법, 의료기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· 약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·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항 ·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· 새마을 노임 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· 부랑인 단속(남녀포함) 수용보호(남바 수용시설) 및 행려사망자처리 현황 ·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· 노동조합 설립, 변경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 · 구인, 구직 수요조사 및 취업알선 현황 · 직업안내소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 ·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· 가정의례(묘지, 매·화장, 장의, 예식 등)에 관한 사항 ·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현황 · 청소년 종합시책 수립 및 조정현황 ·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·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 업무 추진계획 수립 현황 · 공장등록과 실태현황 · 연료수급 조절과 연료판매소 허가 · 가스안전관리 업무 및 가스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·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·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· 기타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한 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출석관계 공무원 - 소관국장 및 관계공무원

7. 감사진행순서

- 감사실서 선언 - 위원장(감사반장)
- 위원장 인사
 - 적극적인 감사당부 및 성실한 수감자세 강조
 - 증인에 대한 사전아내
- 선서
- 국장인사 - 간부소개
- 현황보고 - 감사대장 사무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
- 질의, 답변 - 개별 및 일문일답식 감사
- 서류 및 현장확인 - 관계인 출석, 증인, 의견청취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

8.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

가.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.

- 1996년도 업무계획서
- 1996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
- 1996년도 3,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
- 1996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
- 1996년도 각종 민원(진정·청원·기타) 접수처리부
-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

나. 제출부수 : 15부

다. 감사요구자료

-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'96. 1월 이후의 것을 작성
- 각 위원회별로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 보고

라. 제출처 : 시민보사위원회 감사장

9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

가. 일일보고

-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

나.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

별표 #1

'96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

- 제출일시 : '96. 11. 18 한
- 제출처 : 시민보사 상임위원회 간사
- 요구자료 내역

해 당 기 관	요 구 자 료 명	비 고

○ 제출자 소속 : 시민보사 위원회
의원명 : (인)

